

도시가스사업자 부당행위 개선 이행 실태조사 실시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협의회(위원장 이효련)는 “지난해 지식경제부가 전국 33개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2010년 3월 현재 대부분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가스시공업계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도시가스사업자 부당행위 개선 이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아직도 일부 도시가스회사에서는 부당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미개선 도시가스사에 대하여 이를 조속히 개선토록 지시하고, 그 조치 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렸다. [편집자 주]

지식경제부는 “가스시공업체의 도시가스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도시가스사 내부시방 또는 기준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하거나 법령과의 상충 등으로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한 소요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따라 지경부는 지난 2009년 말까지 전면 재정비 및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도록 각 도시가스사에 시달렸으나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동일 유사한 민원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협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2009년 조사된 개선내용 및 추가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을 바탕으로 지난 4월과 5

월 2개월 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를 비롯하여 지식경제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와 공동으로 개선이행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도시가스사에서는 아직까지도 이를 개선치 않고 있어 가스시공업체 및 사용자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도시가스사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을 촉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회신토록 조치했다.

한편,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시공협의회는 가스시공 회원사에게 이같은 내용을 주지시키고 회원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녹색성장 선진한국 · 생활공감 국민행복



지식경제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시가스사 시공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개선이행 미흡

1. 관련

- 가. 에너지안전팀-194호(2009. 6. 5)
- 나. 에너지안전팀-766, 768호(2009. 8.10)
- 다. 에너지안전팀-1186호(2009. 9.27)

2. 가스시공업체의 도시가스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자가 현행 도시가스 사업법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을 도시가스사 내부시방 또는 기준에 의해 과도하게 규제 하거나 법령과의 상충 등으로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고, 또한 소요비용을 가스사용자에게 전가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2009년말까지 전면 재정비 및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같은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동일 유사한 민원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2009년 조사된 개선내용 및 추가 제기되고 있는 민원들을 바탕으로 2010.4-5월 해당협회(한국도시가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등과 공동 개선이행 실태를 조사한 바, 일부 도시가스사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아 시공업체 및 사용자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불임 미개선사항에 해당되는 도시가스사는 이를 조속 개선토록 하시고, 그 조치결과를 회신(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실태조사결과 도시가스사별 미개선 내역 1부. 끝.

지식경제부



수신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진도시가스사, 인천도시가스사, 중부도시가스사, 전북도시가스사, 군산도시가스사, 원주도시가스사, 참빛충북도시가스사, 대구도시가스사, 경남도시가스사, 지에스이, 제주도시가스사

행정사무관 서동배 에너지안전팀장 권상호 전결 06/06

도시가스사별 미개선 현황

2010년 5월 현재

확인항목	세부내용	확인결과		비고	
		미개선 내용	도시가스사		
시공관련 서류제출	협약서류 (조건부 제출 3종 포함 총 14종) 외 추가서류 징구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사본 징구	전북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 영수증 사본 징구	전북, 대구		
홈페이지 게시 안내	홈페이지 게시 안내	홈페이지 내용 보완	목록은 게시하나 양식은 미게시	경남	
			실제 미징구 서류를 목록에 명기	한진	
		홈페이지 미게시(홈페이지 없음)	참빛원주, 참빛충북, 목포(지에스이, 제주)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전년도 지적사항	일부 미개선 : 총 109건 중 9건	에스코, 참빛충북, 전북, 군산, 목포, 대구	2009년 도시가스사 공급전 안전점검기준 미개선 현황 참조	
	추가 확인사항	사용시설 부지내(조경구역, 녹지대)에 표지판 설치	군산		
기타 부당행위	가스계량기 관리번호 작성·제출 요구	관리번호 작성·제출 요구	인천, 중부, 군산, 대구, 전북		
	보수용 자재 요구	보수용 자재 요구	군산, 중부		

2009년에 지적된 도시가스사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미개선 현황

도시가스사	항목	공급전 안전점검 기준	법령 및 코드기준
에스코	로케팅와이어[PE배관]	굵기[m]	굵기[6m]
참빛충북	기밀시험	비파괴 혹은 시공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입배관의 경우 49.2KPa 이상	최고사용압력 1.1배 또는 8.4KPa 이상 기밀시험
전북	양식[시공내역서]	가스계량기 번호 등 기물현황 작성	규정하지 아니함
	내압시험	PE배관 내압시험[0.15MPa] 실시	저압배관은 내압시험을 규정하지 아니함
군산	배관표시	80A 이상 배관의 표시사항은 유성페인트 사용으로 한정(스티커 불가)	가스명, 압력 및 흐름방향을 표시하도록 규정 재료는 규정 없음
	계량기	1개사 제품의 동일한 색상 설치	규정하지 아니함
대구	공급전 안전점검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시설에 대하여 중복점검 기준 적용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 대상은 공급전 안전점검 제외
	기밀시험	압력 3MPa 이상 적용	최고사용압력 1.1배 이상
목포	배관설치 장소	4엘보우 시공[80A 이하] [매립지역으로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축흡수 조치]	지반침하에 의한 손상방지 조치 세부규정 없음 [2~3 엘보우 시공]